	재사용할 수 없는 용기·포장물의 폐기 (승인신청서 / 승 인 서)	처 리 기 간
		7 일

근거 : 국세청고시 제98-6호

신청인	① 성명 (대표자)		② 주민(법인)등록번호	
	③ 상호 (법인명)		④ 전화번호	
	⑤ 주소 (본점소재지)			
	⑥ 사업장 위치			

신 청 내 용

⑦ 당 초 승 인		⑧ 용기·포장물 명칭	⑨ 규 격	⑩ 폐기신청 수량	⑪ 당초 승인수량
년 월 일	번 호				
⑭ 폐기 사유					
⑮ 참고 사항					

위의 용기·포장물을 재사용할 수 없으므로 국세청고시 제98-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하고자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승인 제 호

위 신청사항을 승인함

년 월 일

세무서장 (인)

귀하

210㎜×297㎜(신문용지 54 g/㎡)